

# 주유소 거리제한 폐지

- 통상산업부 -

○ 현재 도지역에만 설정되어 있는 주유소간 거리 제한 (시·읍지역 : 500m, 면지역 : 1km)이 95. 11. 15부터 폐지됨으로써 전국적으로 주유소 거리제한이 완전히 철폐될 예정으로 있음

○ 주유소간 거리제한은 84. 6월 「석유사업법」에 처음 도입된 이후 우리 경제의 자율화,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주유소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완화해 왔으며, 93년 11월 「석유사업법」 시

고 있음

○ 정부는 주유소 거리제한의 완전 폐지에 따른 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시·도의 「주유소 허가기준 고시」내용보완, 주유소 유통마진 조정, 석유유통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무분별한 주유소신설 자체 유도 등 각종 보완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주유소 거리제한 폐지의 기본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임.

## 1. 주유소 거리기준 완화추이

시기	지역	서울지역	광역시지역	시·읍지역	면지역
1984.6		1Km	1Km	1Km	2Km
1989.2		700m	500m	500m	2Km
1991.11		350m	500m	500m	1Km
1993.11		폐지	폐지	500m	1Km
1995.11				(폐지에정)	(폐지에정)

행령 개정시 동 시행령 부칙에 금년 11월 15일부터 완전 폐지토록 이미 행정예고한 사항임

○ 그간 주유소 거리제한의 완화로 주유소 수가 증가하여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는 있으나, 주유소간 경쟁을 촉진하여 서비스 질의 향상과 소비자의 편의 제고 및 주유소의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등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

## 2. 전국 주유소 수 증가추이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6
6대도시	506	635	839	858	1,027	1,259	1,747	2,094
(증가율, %)	(-)	(2.1)	(5.4)	(2.3)	(19.7)	(22.6)	(38.8)	(52.5)
기타	942	1,786	2,613	3,290	4,183	4,953	5,549	5,790
(증가율, %)	(-)	(18.3)	(18.3)	(25.9)	(27.1)	(18.4)	(12.0)	(11.3)
계	1,448	2,421	3,452	4,148	5,210	6,212	7,296	7,884
(증가율, %)	(-)	(14.9)	(14.9)	(20.2)	(25.6)	(19.2)	(17.5)	(14.9)

## 3. 정유사별 주유소수 현황('95. 6월 현재)

	유공	호유	한화	쌍용	현대	무플	계
주유소수	2,939	2,250	1,000	967	727	1	7,884
(증가율, %)	(37.3)	(28.5)	(12.7)	(12.3)	(9.2)	(-)	(100.0)